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강북창업지원센터 센터장

I 사업 개요

- 프로그램명 :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10 ~ 2023.11.15 (1.5개월)
- 사업목적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창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으로 강북형 우수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견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중 업력 5년 이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10개 점포
 -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 : 점포당 최대 3회(현장 방문)
 -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강북청년창업마루 진행 프로그램 참여 우대
 - 강북구 협력 지원사업 참여 우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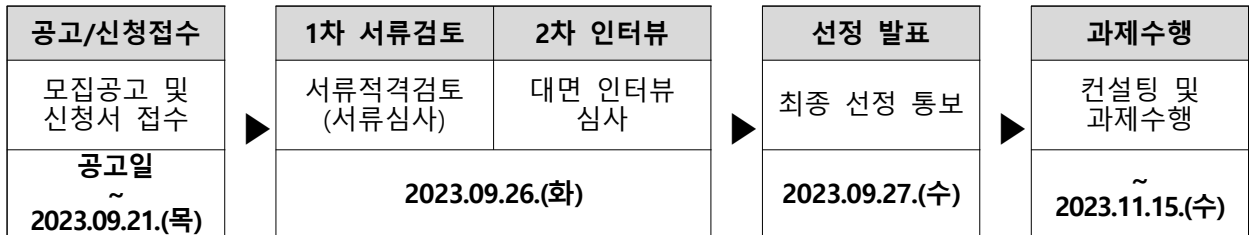
II

모집 개요

□ 프로그램명 :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3.09.21.(목)

□ 모집절차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gbchangup@gmail.com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123, 강북청년창업마루 3F 사무실
- ※ E-mail 접수 후 또는 방문 접수전에 운영지원실(02-908-8246)로 전화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 업력 5년 이내 창업자 또는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혁신 아이템'이란, 보유 아이템 또는 신규 사업화 아이템에 새로운 가치와 고객(소비자) 만족 요소를 부여한 것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수행 기간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 참조)

□ 우대사항

- 대표(신청자)가 청년 (만19~39세)
- 대표(신청자)가 강북구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기준)
- 초기창업자(1년이내, 1년~2년이내, 2년~5년이내)
- 매출(5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7시간 이상)
- 강북사랑상품권 취급 점포
- 온라인 마켓 개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자)

□ **협약기간** : 2023.10 ~ 2023.11.15. (1.5개월)

□ **선정규모** : 10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과제 수행기간 내) : 기업(점포)당 최대 3회(현장 방문)
- 점포 성장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사용 항목	집행 내역
사업장 (리)모델링	■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제품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재료비
브랜드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 · 홍보 용역비 (※홈페이지 관련 및 적립후 차감식의 지원사항은 제외)
산업재산권/인증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 국내외 각종 인증(기업,제품) 비용

※ 지원금 및 자부담금 관련 사항은 [붙임1] 참조

※ 기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확인후 신청바람

□ **제출 서류**

- 1) 신청서 및 점포성장계획서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필수)
- 3) 청렴이행각서 (필수)
-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창업자)

- 5) 소상공인확인서 (기창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회원가입후 출력
- 6)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창업자)
-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재무제표(기창업자)
※ 세무서, 홈택스 발급, 2022년(최근 년도) 자료
- 8) 거래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 9) 기타 우대사항 증빙 자료
 -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 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증 (7시간 이상)
 - 온라인 마켓 개설 정보 (통신판매업신고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강북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실

: ☎ 02-908-8246 / gbchangup@gmail.com

[붙임 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코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지원 제외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기창업자 기준)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붙임 2] 참조)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용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및 「붙임」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창업자 중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유사사업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강북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등 임.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창업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전기·전자제품, 기계 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학원, 교습소, 공부방, 변호사사무실, 부동산중개업 등의 단순 서비스업 사업자
- 슈퍼마켓, 철물점 등 단순 유통/판매(위탁판매 포함) 사업자
- 협회,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 비영리 사업자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운영되는 혁신형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사업비 환산 방법

지원사업비 및 자부담 환산 방법

1. 부가가치세(VAT)가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단위:원]

No.	총 사업비		지원금 (C=기준공급가액*0.9)	사업자 자부담금 (D=A-C)
	총비용(A)	기준 공급가액(B)		
1	1,100,000	1,000,000	900,000	200,000
2	2,200,000	2,000,000	1,800,000	400,000
3	3,300,000	3,000,000	2,000,000	1,300,000
4	5,500,000	5,000,000	2,000,000	3,500,000

※ 기준 공급가액(B) = 총비용(A) × 10 ÷ 11

※ 사업자 자부담금은 참여사업자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입하고, 지원금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원신청 함

2. 부가가치세(VAT)가 없는 계산서 발행의 경우.

[단위:원]

No.	총 사업비		지원금 (C=기준공급가액*0.9)	사업자 자부담금 (D=A-C)
	총비용(A)	기준 공급가액(B)		
1	1,000,000	1,000,000	900,000	200,000
2	2,000,000	2,000,000	1,800,000	400,000
3	3,000,000	3,000,000	2,000,000	1,300,000
4	5,000,000	5,000,000	2,000,000	3,500,000

※ 기준 공급가액(B) = 총비용(A)